

6. 기 타

가. 집행문부여의 소

민사집행법 제33조⁴⁹¹⁹⁾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·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,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‘조건이 성취’⁴⁹²⁰⁾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‘승계사실’⁴⁹²¹⁾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. 따라서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⁴⁹²²⁾ 일부 인용의 경우,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해야 한다.⁴⁹²³⁾

4919) 민사집행법 제33조(집행문부여의 소)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 제30조(집행문부여)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. 다만,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31조(승계집행문)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. 다만,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,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.

4920)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0다229987 판결; “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,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.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,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.” ☞ 피고 회사에게 ‘원고(노조)의 2016. 12. 1.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가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’을 명하는 가치분 결정은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해당하고, 그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집행문부여의 소로써 집행문부여를 구할 수 없다고 한 다음, 원심이,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재판에 대하여 특별항고로만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.

4921)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다21967 판결; “증척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,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(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)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”

4922)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93087 판결(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선행판결에 표시된 피승계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,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항변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예).

4923)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

나.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

‘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’은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속하는 요건에 흠결⁴⁹²⁴⁾이 있음에도 집행문부여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 부여한 경우에 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 기타의 시정을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이다.⁴⁹²⁵⁾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, 변경 등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문부여기관이 이를 조사·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.⁴⁹²⁶⁾

‘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’⁴⁹²⁷⁾는 ①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됨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(제30조 제2항)와 ②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(제31조 제1항)에,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,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1심 판결법원(직분판할, 전속판할)⁴⁹²⁸⁾에 제기할 수 있다.

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(2009다18045). 그 주문 형식은 “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(본소), 2006가단2750(반소)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에 관하여 2,100만 원의 범위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.”이다.

4924)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3다80627 판결: “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,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.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,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,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.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.”

4925) 민사집행법 제34조(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) 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. 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
4926) 대법원 2011. 3. 8.자 2011카기85 결정(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전액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는 신청인 주장의 사유는 위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이라는 실체상의 사유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예).

4927) 민사집행법 제45조(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) 제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,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 제44조(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)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
4928) 대법원 2022. 12. 15.자 2022그768 결정: “여기서 ‘제1심 판결법원’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,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할 한 법원을 가리키고, 이는 직분판할로서 성질상 전속판할에 속한다. …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(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),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,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판할로서 성질상 전속판할에 해당한다. …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5호에서 집행